

제2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0. 3. 3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04호로 2020년 3월 2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조치가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요청함.

3. 주요 내용

◎ 2020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증감율(%)
계	680,800,895	670,292,925	10,507,970	1.57
일반회계	652,077,928	641,569,958	10,507,970	1.64
특별회계	28,722,967	28,722,967	0	0
의료급여	461,270	461,270	0	0
건축안전	660,480	660,480	0	0
주 차 장	27,601,217	27,601,217	0	0

4.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가. 일반회계 ----- 10,507,970천원

1) 세입예산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본예산+간주예산)	증(△)감	비 고
계	652,077,928	641,569,958	10,507,970	
지방세 수입	158,577,661	158,577,661	0	
보통세	157,890,549	157,890,549	0	
지난년도 수입	687,112	687,112	0	
세외수입	68,715,116	68,715,116	0	
경 상 적 세외수입	57,250,839	57,250,839	0	
임 시 적 세외수입	11,464,277	11,464,277	0	
지방교부세	11,241,000	11,241,000	0	
조정교부금	86,372,435	86,372,435	0	
보 조 금	279,644,731	277,572,761	2,071,970	
국고 보조금	161,661,434	160,435,893	1,225,541	-긴급복지 지원 888(증223) -가정양육수당 지원 4,796 (증354)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 674((증648)
시비 보조금	117,983,297	117,136,868	846,429	-긴급복지 지원 444(증112) -가정양육수당 지원 4,103 (증303)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 449(증43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7,526,985	39,090,985	8,436,000	
순 세 계 잉 여 금	47,526,985	39,090,985	8,436,000	-19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2) 세출예산 편성 내역

● 주요사업 추경예산 총편성액----- 10,507,970천원

▶ 코로나19 확산 예방 물품 구입 및 방역 등 (기획예산과)	520,000천 원
▶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등 (기획예산과)	46,400천 원
▶ 예비비 (기획예산과)	3,129,050천 원
▶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일자리경제과)	400,000천 원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업체 지원 (일자리경제과)	150,000천 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일자리경제과)	3,081,000천 원
▶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 (복지정책과)	1,296,944천 원
▶ 코로나19 대응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존 (복지정책과)	41,000천 원
▶ 긴급복지 지원 (복지정책과)	445,320천 원
▶ 코로나19 대응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비 보전 (보육지원과)	119,336천 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지원과)	787,576천 원
▶ 코로나19 대응 주야간보호센터 운영비 보전 (어르신복지과)	99,046천 원
▶ 여의나루역 보행환경개선 (가로경관과)	30,000천 원
▶ 공동주택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지원 (주택과)	46,966천 원
▶ 문자서비스 이용료 (홍보미디어과)	30,000천 원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비 (보건지원과)	132,575천 원
▶ 방역소독 (보건지원과)	82,620천 원
▶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지원 (의약과)	50,000천 원
▶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 방역 (의약과)	20,097천 원

나.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일반회계)

(단위:천원)

부 서 별		최종예산	기정액	증감액 [추경편성액]	증감률[%]	
총 계		235,892,933	228,251,151	7,641,782	3.35	
감담	사관	381,790	381,790	0	0	
기재	기획국	기예산과	6,205,137	2,509,647	3,695,490	147.25
		일자리과	12,274,181	8,643,181	3,631,000	42.01
		재무과	597,744	597,744	0	0
		징수과	900,346	900,346	0	0
		부과과	1,016,720	1,016,720	0	0
미래비전	추진단	비협력과	859,048	859,048	0	0
		미래교육과	31,320,806	31,320,806	0	0
		사회적경제과	2,642,966	2,642,966	0	0
행지	원정국	총무과	110,684,838	110,684,838	0	0
		홍보미디어과	4,988,947	4,958,947	30,000	0.60
		자치행정과	12,838,073	12,838,073	0	0
		문화체육관광과	22,358,347	22,358,347	0	0
		민원여권과	1,317,175	1,317,175	0	0
보건	소	보건지원과	11,850,530	11,635,335	215,195	1.85
		건강증진과	13,838,243	13,838,243	0	0
		의약과	1,382,412	1,312,315	70,097	5.34
		위생과	435,630	435,630	0	0

다.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일반회계)

【기획재정국】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내역
총 계	20,994,128	13,667,638	7,326,490	53.6% 증
기획예산과	6,205,137	2,509,647	3,695,4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 예방 물품 구입 및 방역 등 520,000 ◦ 기관공동 특근매식비 등 46,400 ◦ 일반 예비비 3,129,090
일자리경제과	12,274,181	8,643,181	3,63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400,000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업체 지원 150,000 ◦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081,000

【행정지원국】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내역
총 계	152,187,380	152,157,380	30,000	0.02% 증
홍보전산과	4,988,947	4,958,947	3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서비스 이용료 30,000

【보건소】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내역
총 계	27,506,815	27,221,523	285,292	1.05% 증
보건지원과	11,850,530	11,635,335	215,1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소독 82,620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비 132,575
의약과	1,382,412	1,312,315	70,0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지원 50,000 ◦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 방역 20,097

5. 검토의견

가.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 2,282억 5,115만원에서 76억 4,178만원이 증액된 2,358억 9,293만원으로 증감률은 3.35%임.

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1) 기획재정국

○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6억 6,763만원 대비 73억 2,649만원이 증액(53.6%)된 209억 9,412만원으로

이는 코로나 피해기업 용자지원금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전출금, 예비비를 증액편성하였으며, 코로나 예방물품 및 방역비, 확진자 방문 휴업사업장 보상금을 신규편성한 것이 주된 요인임.

○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36억 9,549만원이 증액 (150%)된 62억 513만원이 계상된 바, 마스크 등 코로나19 예방물품 및 방역비 5억 2,000만원 신규편성, 예비비 31억 2,909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에 기인함.

-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36억 3,100만원이 증액 (42%)된 122억 7,418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근로자 지원 가족돌봄비용 4억원,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사업장 임대료와 인건비 등 영업손실보상금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코로나 피해기업 용자지원금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0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음.

(2) 행정지원국

- 행정지원국 홍보미디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00만원이 증액(0.6%)된 49억 8,894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코로나19 관련 정보 안내를 위한 문자서비스 사용료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임.

(3) 보건소

-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2억2,152만원 대비 2억 8,529만원이 증액(1.05%)된 275억 681만원으로 이는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 인건비, 방역비 및 물품 구입비,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지원비 등을 신규편성한 것이 주된 요인임.

○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 보건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1,519만원이 증액(1.85%)된 118억 5,053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운영 인건비 6,616만원, 방역약품 구입비 1,782만원, 방역활동비 6,480만원, 이동형 음압기 구입비 401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방역비 970만원, 선별진료소 컨테이너 설치 1,130만원,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1천만원이 신규편성되었기 때문임.
- 의약과는 기정예산 대비 7,009만원이 증액(1.72%)된 13억 8,241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지원비 5,000만원 증액, 공적 마스크 판매약국 방역비 2,009만원을 증액한 것에 기인함.

다. 총평

- 종합적인 검토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 2019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분담금 등 총 재원규모는 105억 797만원으로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예상치 못한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다음연도 본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추경요건에 부합한다 할 것임.
-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의 피해를 완화 및 국민들에게 사회재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절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완화시키려는 시도가 담긴 의미있는 예산으로 보임.
- 다만 금회 추경의 원인인 코로나19의 추이가 아직까지 명확히 예측할 수 없이 불확실한 상태인 점과 긴급하게 이루어진 추경안인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취지에 적합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영등포구의회
제220회 임시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0. 3. 3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05호로 2020년 3월 2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이차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을 신규 편성하여상공인들의 자금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요구 내역
 - 변경 대상: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 변경 요구액: 30억 8,100만원 이차보전금, 융자금 증액
 - 기금의 용도: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

4. 검토의견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의 2/10 이상 금액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차 보전금 및 융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총 조성액은 124억 9,100만원이며, 당초 2020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에 의하여 기금 운용액은 98억 3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 중 이차보전금 8,1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융자금 50억원을 80억원으로 30억원 증액한 반면, 전입금 66억 3,100만원을 97억 1,200만원으로 30억 8,1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서, 전체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증감이 발생한 것임.
- 검토 결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민간 경제활동이 급속히 위축되는 등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구민피해를 조기에 회복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2(융자계획수립 및 추가융자)

① 구청장은 매년초에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기금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융자 할 수 있다.